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	196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7. / . 25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 안 이 유

- 1997. 1. 1자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필요

□ 주 요 골 자

- 국가직공무원 ⇒ 지방직공무원 : 102명
- 2차조직개편시 증원된 5명감축 : 의회사무처 정원의결(△6 ⇒ △1)에 따른 증원된 5명 감축
 - 도본청 977 ⇒ 981명(지방직전환9, 2차조직개편시 의회사무처 5명증원분 감축)
 - 직속기관 1,003 ⇒ 1,095명(공무원교육원2명, 농촌진흥원 90명)
 - 증평출장소 232 ⇒ 233명(소장 1명)

□ 근 거 법 령

-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□ 따 로 불 입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
-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- 참고자료(근거법령) 1부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(정원의 총수) 제1호, 제3호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본 청 : 981명
3. 직속기관 : 1,095명
5. 출 장 소 : 233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.